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강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7. 10. 16)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 제안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별도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제정 1988. 05. 01. 조례 제1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23. ~ 9. 12.)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강희순)

○ 본 폐지조례안은

2007. 05. 17.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2007. 12. 21.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69호, 2016.5.29., 일부개정]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30.] [대법원규칙 제2697호, 2016.11.29., 일부개정]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4.24.>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시·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6호, 2017.6.2.,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사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 18호]

전문개정 1991. 7.31 조례 제168호

개정 1995. 9. 1 조례 제310호

1999. 8.16 조례 제454호

(일부개정) 2005.09.20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08.04.07 조례 제 772호

(일부개정) 2011.06.30 조례 제881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7)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 삭제 (1999. 8.16)

제4조(부과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5. 9.20)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부과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 2008.4.7)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5. 9. 1)

③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9. 1)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 9. 1)

제6조(사전징수) 삭제 (1999. 8.16)

제7조(납부독촉) 삭제 (1999. 8.16)

제8조(체납처분) 삭제 (2008.4.7)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